

2026년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녹색산업 수출선도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1 사업 개요

□ 목적

-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기업으로 육성

□ 지원 개요

- 대상: 우수 녹색기술·제품을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예산: 총 79억 원
- 규모: 38개사 내외, 단계별 국고보조금 최대 1.5~2.5억 원
- 주요 내용 ※ <안내서> 단계별 지원내용 참고
 - (기반강화(1단계)) 수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 마케팅, 인증 취득 등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수출 기반 조성을 지원
 - (판로확장(2단계))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초청, ESG 컨설팅 등 해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성과 창출을 집중 지원

단계		지원기준 ¹⁾		지원 내용	지원 규모 ²⁾	
단 년 도	기 반 강 화 (1단계)	2개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 미만 또는 수출액 1억 미만		수행기업(직접보조금) - 마케팅, 기술·실적 확보, 출장·초청	최대 8천만 원	최대 1.5억 원 (16개사 내외)
				컨설팅기관(간접보조금) - 전략컨설팅 용역 ※ 전담기관 입찰	최대 7천만 원	
다 년 도	판 로 확 장 (2단계)	1 년 차	2개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 이상 또는 수출액 1억 이상	- 수출 컨설팅, 마케팅, 기술·실적 확보, 국외 출장, 바이어 초청 등	최대 2.5억 원	최대 4억 원 (22개사 내외)
		2 년 차	1년차 지원사업 최종 평가 점수 '70점' 이상		최대 1.5억 원	

1) 지원기준: 수출 비중 또는 수출액 중 선택 가능(기업이 신청한 단계의 기준을 적용)

- **비중**: 결산 완료된 **최근 2개년('24년, '23년)** 재무제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 **수출액**: **최근 2개년('25년, '24년)** 수출액(직·간접) 기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총신고가격(FOB) 원화 금액 및 간접수출의 경우 증명서 내 금액 또는 계산서 원화로 적용(수주 불인정)

2) **기반강화(1단계)의 경우 직접 지원금액은 최대 8천만 원 한도로 신청**(전략컨설팅 부분은 직접 지원금이 아닌 간접보조금(용역) 형태로 제공)

※ 지원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지원기준에 부합한 **1개 단계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부적합 단계는 자동 탈락)**

※ **해당 단계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계 이동 불가)**

□ 자기부담금

- 지원 비율: 매출액 구간별 국고보조금 최대 50~70%, 자기부담금 최소 30~50%(자기부담금 비율: 현물 최대 80%, 현금 최소 20% 이상)

결산 완료된 2년 평균 매출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최대 70%	최대 60%	최대 50%
자기부담금	최소 30%	최소 40%	최소 50%

※ 기반강화 1단계는 신청한 직접 지원금액(최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자기부담금 부담 및 판로확장 2단계는 신청금액(최대 2.5억 원)에 대한 자기부담금 부담

□ 신청 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체 중 우수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녹색기업,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의지·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 “환경산업” 사업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 “녹색산업” 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재생에너지” 사업자
 - 기타 정부 정책 및 환경 유관 산업 영위 사업자

분류	환경 유관 산업 예시
자원순환 관리	폐기물 관리기기 제조·건설·서비스업,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제조, 건설, 재활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가공·유통업 등
물관리	물산업 관련 기기 및 제품 제조업, 건설업, 물 공급 관련업, 분석 서비스업 등
환경복원	토양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건설업 등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석업 등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기기 제조·건설·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기기 제조·서비스업 등
환경안전 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건설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서비스업 등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건설·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보전 및 이용 관련 제조·건설·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 감시·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조 및 발전사업,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산업,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에너지 산업, 운영·유지관리 및 에너지 서비스업 등
기타	기타 환경 관련 법 및 정책(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

※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 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시 중복성 검토를 통해 수행 가능 여부 통보**

□ 신청 자격 제한

○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 기준

1.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2. 개인사업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6.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7. 지원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8.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9. 제37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10.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1. 접수마감일 기준,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수급 중임이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된 기업 또는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정부 지원 이력 조회 등 포함)
12.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보조사업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13.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받은 경우(환수금 미납 중인 경우 포함)
14.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10년 이내에 본 보조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음 지원 횟수 및 지원 기간을 초과한 경우(다년도 사업 기준은 '26년도부터 적용)
 - 단년도 사업은 총 3회, 다년도 사업(2년을 1회로 한다)은 총 2회를 초과한 경우
 - 단년도 사업과 다년도 사업의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4년을 초과한 경우
15.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16.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보조사업 의무를 불이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
18. 전담기관이 공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신용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그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

□ 가점 사항(최대 10점)

구분	항목	배점
가점	본 사업의 전 단계를 성공 종료 후, 다음 단계에 신청하는 기업* * '24~'25년도 1단계(전략수립) 기업이 판로확장(2단계)를 신청하는 경우	5점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	2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기후에너지환경부]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 대상 공모전 수상기업	2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재생에너지 정의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탁월' 판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사업을 종료하였음을 해당 사업 운영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업	1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판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사업을 종료하였음을 해당 사업 운영기관 장이 인정하는 기업	1점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1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 인증, 기술 검증, 환경 기술 성능 확인, 녹색인증,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술의 경우	1점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 개인포상 불인정	1점	

* '24년도 이후 참여기업에 해당

** 해외 진출 지원사업: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해외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등

※ 가감점은 수행기업 단체(기업)에 한함

※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실적 및 유효기간 이내 대상

※ 신청기업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본 등) 제출 시 인정(미제출 시 불인정)

※ 보조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및 유효기간 이내 대상

□ 주요 지원내용

- 단계별로 구분된 지원내용에 따라 사업비 활용지원

구분		단년도	다년도
		기반강화 [1단계]	판로확장 [2단계]
전문가 활용	전략컨설팅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 (컨설팅사 위탁)	-
	ESG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탄소 발자국 보고서 작성 등)	-	◎
	브랜드 개발 (제품 컨셉, CI,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	◎
	전문 컨설팅 (법무, 회계, 감정평가, 특허, 세무, 통관 등 자격보유 전문가)	◎	◎
	수출 컨설팅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시장조사 등)	-	◎
	해외법인설립 및 계약지원 (해외법인설립, 공공조달 참가,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	◎
	통번역	◎	◎
마케팅	전시회/행사 참가 (해외 전문 전시회, 제품시연회 등)	◎	◎
	홍보물 제작 (영상, 브로슈어, 웹페이지, 모형 등)	◎	◎
	전자상거래 등록	◎	◎
	홍보/광고 (TV, 신문, 잡지, SNS 등)	◎	◎
기술실적 확보	인증 취득 및 갱신	◎	◎
	국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갱신	◎	◎
	시험분석·성적서 (영문 등 해외 진출 목적만 인정)	◎	◎
출장 및 초청	국외출장	◎	◎
	바이어 초청 (항공권, 숙박비)	◎	◎
수수료	물류비 (수출물품 선적, 시제품, 전시 참가용 등)	◎	◎
	수출보험	◎	◎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해외 진출 관련)	◎	◎

※ 미지원 항목: 시제품, 샘플 등 제작, 기자재 구입·렌탈, 운영비성 항목(사무실 임대료 등), 국외여비(일비, 식비)

2 선정 절차

□ 선정 일정(안)

- 공고: 2026. 1. 20.(화) ~ 2. 9.(월), 16:00까지
- 접수: 2026. 1. 23.(금) 09:00 ~ 2. 9.(월), 16:00까지
 ※ 시스템 개편 중으로 접수 시작일은 늦춰질 수 있음
-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대상 통보(개별): 2026. 2. 10.(화) ~ 3. 3.(화)
 ※ 선정평가 대상 통보일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선정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즉시 발표자료(PDF 변환 파일) 제출 필요(사전 준비 요망)
- 선정평가(발표평가): 2026. 3. 4.(수) ~ 3. 6.(금)
- 최종 선정기업 통보: 2026. 3. 9.(월) 이후



※ 상기 일정은 지원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사업안내서 및 운영지침 내 서식 참조
-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준비 후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www.keia.kr)에 **온라인 제출**

< 전담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경로(상단 배너) >

 한국환경산업협회	협회소개 * KEIA 소개 * 조직도 * 연혁지 및 약도	회원서비스 * 회원사 기업안내 * 회원사 현황 * 회원사 서비스 안내 * 회원사 동정 * 최신기술동향	주요사업 * 환경산업 육성 지원 * 해외인출 지원 * 녹색산업 정보제공 * 제도개선 및 교류 지원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협화뉴스 * 환경산업정보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신청 * 전시회 및 행사신청 *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div>	환경DB검색 * 환경기술, 제품 검색 * 환경분야 소·부·장 정보 * 환경산업계 검색 * 환경산업단 검색 * 해외기업 검색
---	---	--	---	---	--	--

○ 유의 사항

- 마감시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또는 신청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미접수 처리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전일까지 제출을 권고(16:00 정각에 접수 페이지 마감, 연장불가)

□ 제출서류

구분	항목	수량
1	신청서(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주)나이스디앤비 "나이스텍스 시스템" 전송 ¹⁾ * 별도 서류 제출X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최근 2개년('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²⁾	각 1부
5	4대 사회 보험료 완납 증명서(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최근 3개년('23년~'25년) 수출실적 증빙서류 ³⁾	각 1부
8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⁴⁾	각 1부
9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⁵⁾	각 1부
10	기타 증빙서류(가점 사항, 실적 등 해당 시)	각 1부

1) 공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로 간주(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으며, 시스템 동의 필수)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만 가능(세무서장 날인본)

3) 수출실적 증빙서류

- 직접수출: TmyData 플랫폼(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기업 종합관리 플랫폼") 동의 영수증* (선정평가 시 활용(1회용)), 별도 서류 제출X

* 2/2(월) 이후 사업신청 홈페이지(www.keia.kr) 내 게시된 링크를 통해 플랫폼 이용 가능하며 접수 시 첨부 필수

- 간접수출: ① [양식]간접수출 확인자료(excel) ②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또는 ③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 확인서+계산서 및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서류

4) 동의서는 대표자 및 참여 인력 전원 제출 필수

5) 사업책임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가 없을 시 경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창업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업은 최근 1개년 기준으로 제출

3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은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직접 방문, 이메일 제출 등 불인정**
- 단, 신청서 용량이 온라인 접수 업로드 용량 초과 시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사전 문의 후 별도 제출 방법(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
 - ※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기한 최소 3일 전 사전 문의된 건만 접수(이후 제출 건은 용량 초과 시라도 불인정)
- 제출 서류는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에 귀속 및 반환되지 않으며 본 사업을 위한 운영지침 양식, 제안내용 등은 타 사업에 활용 불가
 - ※ 타 사업 양식을 제출할 시 양식 미준수에 따라 탈락 조치

□ 제출 서류 사전검토

- 전담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사전검토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즉시 보완 필수
 - ※ 보완사항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필수서류를 제출했으나 전담기관 판단 하 작성내용이 미비할 경우 탈락될 수 있음)
 - ※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탈락 및 해당 기업은 사업 참가 불이익(사업배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행정규칙, 사업 운영지침 등을 준수하므로 관련 내용 및 절차 숙지 필수

4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팀

- 이메일: ge100@keia.kr **※ 이메일 문의 우선 요망**
- 연락처: 02-6933-9514, 02-6933-9518, 02-2088-5359